

방사능 오염손해와 관련된 보험보상에 관한 연구

홍성화* · 이창희***

*, ** 한국해양대학교

A Study of Coverage of Losses caused by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the Insurance

Sung-Hwa Hong* · Chang-Hee Lee***

*,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핵심용어 : 방사능오염, 안전항해, 위험관리, 담보와 면책

Key Words : radioactive contamination, safe navigation, risk management, insurance warranty and exclusion


I. 서론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포항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 사고에 대한 보험의 관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육상에서의 오염과 더불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에 대한 선박, 화물, 선원 등의 피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방사능오염과 관련 주요 사고의 현황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물질 확산에 따른 선박운항지침 권고

- 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방사능물질이 유출되어 일본 동쪽 태평양 상공에 형성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일본-미주 운항선박은 별첨 1 및 2를 참조하여 가능한 한 방사능 확산예상지역을 우회하여 운항하기를 권고합니다.
- ② 상기 권고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운항 계획을 수립하시어, 선원들의 피폭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방사능오염과 관련 주요 사고의 현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등급 평가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
4월(2일)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 레벨 7	7 대형 사고 (체르노빌 사고 (러시아, 1986))
3월(29일) 아세안산문 레벨 6 수준 해당	6 심각한 사고
3월(29일) 일본방위청 레벨 5 잠정평가	5 시설 외부로의 위험사고 (스리마일섬 사고 (미국, 1979))
3월(14일) 국제원자력기구 레벨 4 이상	4 시설 내부의 위험사고
3월(12일) 후쿠시마 제1발전 1호기 폭발	3 중대한 고장
	2 고장
	1 단순 고장
	0 경미한 고장

미원전 누출 방사성물질, 절반 이상 바다로 유입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자, 체르노빌 5배 100만명 예상"

III. 방사능오염과 보험보상 문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보상문제(선박)	검색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보상문제(적하)	검색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보상문제(선원)	검색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대응 방안	검색

* First Author : shhong@kmou.ac.kr, 051-410-4274
 † Corresponding Author : chlee@kmou.ac.kr, 051-410-4642

III. 방사능오염과 보험보상 문제

포괄 책임 방식	열거 책임 방식
포괄적인 해상위험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열거된 개개의 위험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 보험자가 면책하려면 면책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직접 입증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손해가 열거위험으로 인한 사실을 입증 해야함
ICC(A) 조건	ICC(B)와 ICC(C) 조건

III. 방사능오염과 보험보상 문제



2. 면책약관의 적용

2) 방사능오염면책약관의 주요내용

-1983년 ITC-Hulls 제 26조

원자핵 분열 융합 또는 그것에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전쟁무기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취지를 규정

피보험 선박의 손해가 원자핵 무기를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 것을 보험자가 입증하면 보험자의 면책주장이 입증

- 제6조 제1항 제6호: 원자핵장치를 전쟁무기로 사용X → 보험자 보상책임부담
- 제 26조: 원자핵장치를 전쟁무기로 사용 → 보험자 면책

1.4 2009년 ICC(A), ICC(B) 및 ICC(C)조건에서의 방사능 오염손해의 처리

1982년 ICC	2009년 ICC
“원자핵을 전쟁무기”로 사용하여 발생한 방사능오염손해의 경우만 보험자의 면책 인정	“원자핵을 전쟁무기로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장치에서 사용” 하여 발생한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면책 인정

IV. 방사능오염과 위험관리

1. 보험

- ① 가장 과학적이고 안정적인 기법.
- ② 그러나 해상 보험 - 방사능 오염 손해에 대한 보상은 면책
→ 다른 위험 관리 기법을 강구해야 함.

구분	보험종류	선박	선원	비고	
화재보험	화재	O	O	O	
	일부상해보험 (화재, 침수, 충돌)	O	O	X	화재, 침수, 충돌에 대한 보상 (이전 계약은 약관에 따라 다름)
손해보험	원자핵 위험 (화재, 침수, 충돌)	A	X	X	원자핵 위험에 대한 보상 (화재, 침수, 충돌)
	원자핵 위험 (화재, 침수, 충돌)	A	X	A	원자핵 위험에 대한 보상 (화재, 침수, 충돌)
제3자보험	제3자보험	A	X	X	제3자보험에 대한 보상 (화재, 침수, 충돌)
	제3자보험	A	X	A	제3자보험에 대한 보상 (화재, 침수, 충돌)
제2자보험	제2자보험	O	O	X	제2자보험에 대한 보상 (화재, 침수, 충돌)
	제2자보험	O	O	X	제2자보험에 대한 보상 (화재, 침수, 충돌)

III. 방사능오염과 보험보상 문제

ITC-Hulls에서의 방사능오염손해의 처리

1. 위험약관의 적용

선박보험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1983년 협회 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Hulls; "ITC-Hulls")이 사용

- ITC-Hulls 제6조(위험약관) 제1항 제6조

이 보험은 핵장치 또는 원자로의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담보한다.

V. 결론

적하	선원	선박
협회 방사능 면책 약관으로 인해 실제로 계약시 이 약관을 보험자로부터 보상이 불가능하다.	직무상 재해 인정여부: 직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규정에 근거하여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 및 장제비의 지급책임을 부담해야 함.	강제보험가입: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선원의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해서는 P&I Club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원자핵 무기의 적대적 사용으로 인한 손해 뿐만 아니라 원자핵 무기의 실험과 공상시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면책.